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89 발의연월일: 2025. 5. 7.

발 의 자:이개호·정진욱·민형배

위성곤 · 서삼석 · 천하람

조인철 · 황명선 · 어기구

박수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른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기능회복을 돕는 재활전문가이며 치료과정에서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 그러나 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재활치료의 영역에 속하는 두 직종이 학제에서부터 구별되어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병원 등 현장에서 직군 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임금과 처우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.

따라서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학제일원화를 통해 두 직군이 동등한 출발점에서 교육을 받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561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3제1항 중 "물리치료사"를 "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햀 개 정 아 법률 제20561호 고등교육법 일부 법률 제20561호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50조의3(의료인・의료기사 양 제50조의3(의료인・의료기사 양 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) ① 제48조 학위에 관한 특례) ① -----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의료 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 인 및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 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 양성 -----물리치료사와 작업 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 치료사-----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생 략)